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9일,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
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
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팬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 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 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현재 구축 중인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향후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팬데믹 시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대응 병상·자원·인력의 실시간 파악·공유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간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현재 구축 중인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완공 시점에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건립 초기 단계부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기획 및 설치를 병행할 필요도 있겠으나,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추진 중인 감염병전문병원의 완공 시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성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중복되는 자구를 정비하며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약칭하려는 것을 현행대로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수정주요내용

- 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약칭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대로 수정함(안 제8조의2 제3항).
- 나.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중복 자구를 정비함(안 제8조의2제4항).
- 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6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3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정보 수집”을 “정보의 수집”으로 하고,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의료자원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연계하여 구축·운영”을 “연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원내용 등의 사항”을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② (생략)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u>감염병전문병원</u>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감염병전문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u> ----- -----. ④ 국가는 <u>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이 경우 <u>의료자원정보시스템</u> 은 제40조의5에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u>감염병전문병원</u>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u> 을 구축·운영할 수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u>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u>지원내용 등의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u>감염병전문병원</u>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u>지원내용 등의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u> ⑤ (개정안과 같음) ⑥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u>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u>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지원내용 등의 사항”을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③ (생략) <u><신 설></u>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u>
<u>④ (생 략)</u>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⑥ -----</u> <u>-----</u> <u>-----</u> <u>-----</u> <u>-----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u> <u>-----</u> .